

생수공급계약서



“갑” 상호 : 필리핀 대사관
대표자 : 관계자

122-16-45142
“을” 상호 : 서울_{인천}시 계양구 작전동 580
대표자 : 김진성
현대아파트 211-909
도. 소매 생수



상기 당사자간의 하기 조항에 의거하여 생수공급계약 약정을 함에 있어 “갑” “을”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로써 준수하기로 한다.

제1조 【목적】

본 약정은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제2조에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“갑”的 회원사들이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도모와 공동의 번영을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【품명】

“을”이 “갑”에게 공급하는 물품명은 아래 각 호와 같다.

제3조 【공급물량】

- “을”은 생산된 생수의 일정량을 “갑”에게 공급한다.
- 물량 부족 발생시에는 상호협의 하에 조정한다.

제4조 【공급가격】

- 1,500원/ / 개를 기준으로 한다.
- 공급가격의 결정은 년1회 실시한다.
- 약정기간 내에 가격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가상승 또는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.

제5조 【거래방법】

- 물품대금의 결재는 현금으로 한다.
- 물품의 유통 및 인도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“을”이 그 책임을지고 “갑”이 요청에 따라 변상 또는 교환조치를 즉시 행한다.

제6조 【약정기간】

-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.(2021년 5월 3일 ~ 2022년 5월 2일 까지 납품하기로 한다)
- 약정기간 종료 후 양 당사자간의 약정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, 동일한 내용으로 본 계약은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.

제7조 【정보제공 및 기밀유지】

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간의 발전을 위하여 거래과정에서 각종 유효정보를 성실하게 교환하며, 한편 이로 인해 지득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8조 【약정의 실효발생】

- 본 약정의 효력은 즉시 성립된다.

2021년 04월 20일